



제318회 남양주시의회 (임시회)  
제1차 복지환경위원회

남양주시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 
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3. 16.

**복지환경위원회**

전문위원 조 공 선

# 남양주시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박윤옥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3월 5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

## 2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 소아·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, 시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, 실태조사(안 제4조, 제5조)
- 다. 사업, 위탁,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~제8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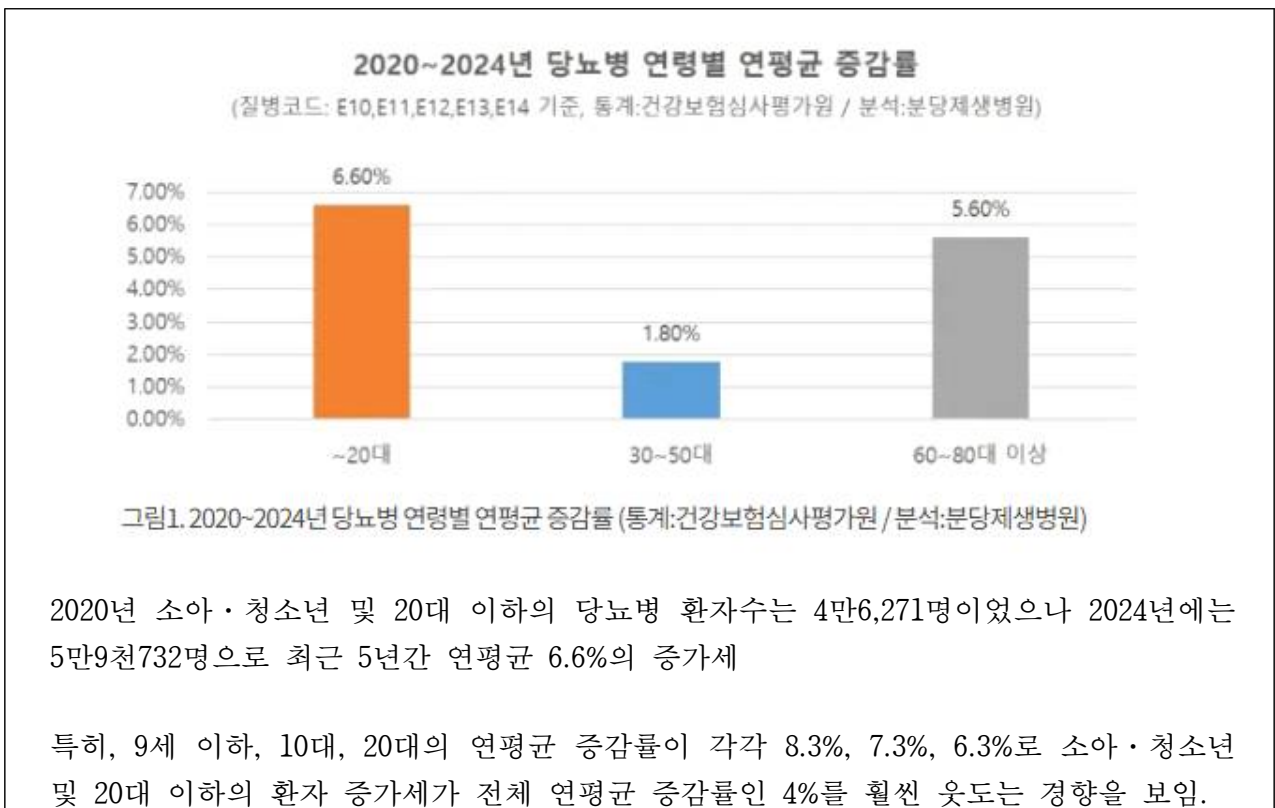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
- 다. 관련부서 :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
- 라. 입법예고 : 2026. 3. 5. ~ 2026. 3. 10. (5일간) /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소아·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

- 우리나라는 2020년 소아·청소년 및 20대 이하의 당뇨병 환자수는 4만6,271명에서 2024년에는 5만9천732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.6%의 증가세를 보이며 소아·청소년기의 식습관의 변화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당뇨병 환자의 발병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소아·청소년에 대한 당뇨병 관리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사회적 인식도 낮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-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, 인식개선 교육,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제정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
-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

☑ 「초·중등교육법」

**제2조(학교의 종류)**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 <개정 2019. 12. 3.>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☑ 「학교보건법」

**제2조의2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**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 조문**

- 가. 자치법규안명 : 남양주시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나. 재정 수반 요인

○ 제6조(사업) 시장은 소아·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소아·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·홍보
- 2.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·교육
- 3. 그 밖에 소아·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\*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**3. 미첨부 사유**

- 기 시행 중인 사업 외 해당 조례 제정 후 신규 사업의 구체적인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예산 추계가 어려우며,
- 각 국고보조 사업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외부 의존 재원의 변동 가능성 및 소요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재정 수반 요인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추계가 어려움

**4. 작성자 :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**